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특성에 맞게 교과용도서 합격 후 개편, 수정, 가격 등 제도를 보완하고, 이의신청, 인정도서 선택, 수정 등 교과용도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에 따른 개편, 수정 제도 보완(안 제2조제7호·제8호 개정, 제26조 제1항·제2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제40조 제1항제4호 개정)

-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교과용도서 개편·수정 시 내용뿐 아니라 기술·서비스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교과서 개편과 수정의 구분은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면 개편, 개편이 아니면 수정으로 봄
- 2)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기술결함 등 즉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예상되므로, 인정도서도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발행자도 수정 필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청을 하도록 함

나. 교과용도서 이의신청 절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교과용도서 검정심사 시 본심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본심사 위원회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다. 고시외 교과목 관련 인정도서의 신청 권한 및 절차(안 제14조제3항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장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해 인정 교과용도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절차를 마련함

라. 디지털교과서 가격(안 제33조제1항 개정)

디지털교과서는 그 특성상 계약기간·방식 등에 따라 정가를 차등하여 정하거나, 할인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9. 30. ~ 10.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내용 또는 기술·서비스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기술·서비스의 변경도 포함한다.

제10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할 때 제18조의 심의회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부터 제22조,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다음 각 호의 자가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의 장이 아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신청

가. 학교인정도서 추천위원회 심의(다만, 해당 위원회는 해당 교과

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다. 공립·사립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을 거쳐서 신청

2. 교육감이 교육청인정도서개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해당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내용”을 “내용 또는 기술·서비스(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용을”을 “내용 또는 기술·서비스(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를”로,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을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과용도서를 발행하는 자는 오류, 결함 등 수정 필요사항이 발견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신청을 해야한다.

제30조 단서 중 “수정”을 “수정, 디지털교과서의 학년도중 변경”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국정 디지털도서의 가격 등) 디지털교과서로 편찬되는 국정도서의 가격은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결정하며,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 세부사항 및 책당 정가의 산정방식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디지털교과서의 가격을 정할 때는 계약기간·방식 등에 따라 정가를 차등하여 정하거나, 할인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디지털교과서의 조정금액은 개발비(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으로서의 고정비 및 고정비 이자 등), 클라우드 비용, 일반관리비, 그 밖의 경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항목별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내용수정의 요청”을 “수정명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u><단서 신설></u>	
제10조의2(이의신청)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0조의2(이의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생략) ② 삭제 ③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경우에는 <u>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u>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 ----- ----- ----- ----- <u>다음 각 호의 자가</u> <u>해당하는 절차에 따라</u> ----- -----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 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 설>

1. 학교의 장이 아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신청

가. 학교인정도서 추천위원회 심의(다만, 해당 위원회는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다. 공립·사립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을 거쳐서 신청

<신 설>

2. 교육감이 교육청인정도서개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해당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 략)

제26조(수정) ①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제30조(주문)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④·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정) ①----- 내용 또는 기술·서비스(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

②----- 내용 또는 기술·서비스(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를 -----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령-----.

③ (현행과 같음)

④ 교과용도서를 발행하는 자는 오류, 결함 등 수정 필요사항이 발견된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신청을 해야한다.

제30조(주문) -----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감이 인정한 인정도서에 대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내용수정의 요청</u>	4. ----- ----- ----- <u>수정명령</u>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78